

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(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시는 2022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「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공모」에 선정되어 지역 특화산업 접목·발굴 및 실증을 전담하는 센터를 구축하고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, '24. 12월 사업종료 후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의무운영 필요 및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가상융합 콘텐츠 분야 종합지원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
- 나. 금오테크노밸리 내 스마트커넥트센터 3~4층에 AI기술을 접목한 가상융합 콘텐츠 분야 종합지원센터인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사용료 감면

- 위 치 :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32길 8-26, 스마트커넥트센터 3~4층
- 사용기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사용(감면)기간 : 2025. 1. 1. ~ 2029. 12. 31.(5년)
- 사용면적 : 1,696.34m²(전용면적 1203.86m², 공용면적 492.48m²)

(5) 감면금액 : 313,648,300원[62,729,660원/년 x 5년]

구 분	연간 사용료 산출내역	연 사용료
대 부 료	재산가격 2,509,186,452원 x 2.5%	62,729,660원

3. 관계법령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제3항제20호, 제17조제5항제2의2호

4. 참고사항

가. 스마트커넥트센터 개요

- (1)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32길 8-26(금오테크노밸리 내)
- (2) 건 립 비 : 126억원(도 37.8, 시 88.2) ※ 준공일 : '20. 11. 13.
- (3) 규 모 : 지상 5층, 지하 2층, 연면적 5,858.6㎡
- (4) 건축물 용도 : 교육연구시설
- (5) 운영방법
 - 건물 운영 및 관리 : 구미시(신산업정책과) 직접운영
 -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(주관기관)

나.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 사업

- (1)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32길 8-26, 스마트커넥트센터 3~4층
- (2) 규 모 : 연면적 1,696.34㎡
- (3) 사업기간 : 2022. 7. 1. ~ 2024. 12. 31.
- (4) 총사업비 : 76.6억원(국 22.6, 도 16.2, 구미시 37.8)
- (5) 사업내용 : 메타버스 콘텐츠 실증지원, 지역 메타버스 특화사업

발굴, 인력양성,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

다. 추진 현황

- 2022. 4. 29. :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·운영 사업 공고
- 2022. 7월 :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·운영 사업 선정
- 2022. 12. 22 :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개소
- ~ 2024. 9월 : 특화사업발굴 및 인프라 운영 등 사업시행
- 2024. 9월 : 공유재산심의회 심의

라. 향후추진계획

- 2024. 10월 :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의회 동의
- 2024. 12월 : 사업종료
- 2025년~2029년 : 성과활용 의무운영(5년간)

마. 기대효과

- (1) AI기반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술기반 저변확대
- (2) AI기반 가상융합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기여
- (3) 가상융합 콘텐츠 적용 및 활용 증대

■ 위치도



■ 조감도



관계법령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3조(사용허가의 방법)

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0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소 관 부 서		회 계 과 (신산업정책과)
입 안 자	과 장	임 응 건 (조 영 열)
	팀 장	김 은 화 (이 은 아)
	담 당 자	전 규 진 (480-5073) (남 미 래) (480-6173)